

## 2013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(추가) 공고

중소기업의 경영 현장에 IT를 접목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,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지원을 위해 『2013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(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) 및 기술유출방지사업(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) 시행계획』(추가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. 7. 1

중소기업청장

### I.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

#### 1. 사업 개요

-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 정보 관리 도모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

## 2. 지원 내용

- 원산지증명(확인)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

### < 원산지증명(확인)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>

지원유형	지원내용	지원조건
서버 일체형	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	최대 700만원 (50% 이내)
정보시스템 연계형	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-PASS, FTA-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	최대 1,000만원 (50% 이내)

\*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기 보유 기업에 한함

## 3. 신청 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## II.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

### 1. 사업 개요

-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

### 2. 지원 내용

- 네트워크, 서버 및 PC보안,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

### 3. 지원 조건

- 총 사업비의 50%(최대 4천만원) 지원

### 4. 신청 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※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선 지원(기술유출 피해 여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상담센터 상담 보고서, 경찰청 수사기록,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중빙)

## III. 공통 적용사항

### 1. 지원절차

①신청·접수→②현장평가→③사업타당성조사(선택)→④사업수행계획서 제출→⑤심사평가→⑥원가계산→⑦참여기업 선정→⑧협약체결 및 사업착수

\*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

### 2. 신청

- 접수기간 : 2013. 7. 1(월) 09:00 ~ 7. 31(수) 18:00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
- 신청방법 :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,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<http://it.smba.go.kr>)

### 3.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(최대 5점)

- 정보화경영체제(IMS) 인증기업 (5점)
-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,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인증기업, 싱글PPM인증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,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따른 장애인기업, 방산(물자)업체,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(각 2점)

\*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

### 4. 지원 제외대상

※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
-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,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
  - \*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(전국은행연합회)에 따라 연체, 대의 변제·대지급·부도 관련인, 금융질서 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

## IV. 지원기관(IT기업 등) 풀(Pool) 등록

※ 지원기관은 IT기업(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) 및 보안솔루션 구축 가능 기업(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)을 의미

### 1. 지원기관 풀(Pool) 등록요건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,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인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(고급기술자 2인 포함) 이상 보유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</li> <li>* 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(국민연금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)</li> <li>* 사업참여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(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) 제출(career.sw.or.kr 참조), 단, 기존참여인력 중 등급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</li> <li>* SW기술자 전문인력 확인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'2012년도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'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</li> </ul>
인프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) 원산지증명 솔루션(전자무역솔루션, 원산지증명시스템, CRM, ERP 등)을 보유하고,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H/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</li> <li>○ (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) 보안솔루션(네트워크, 서버,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)을 보유하고,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·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</li> <li>* 보안적합성 검증(CC인증)을 받은 보안솔루션 보유기업 우대</li> </ul>
사 업 실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공통)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(단일사업)의 관련분야 정보화시스템 개발 완료 실적 각 2건과 500만원 이상 유지보수 완료 실적(1년이상 기간) 각 1건 이상 보유 기업</li> <li>* 중소기업(수요기업)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</li> <li>* 사업 완료실적은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,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</li> </ul>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관</li> <li>*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(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) 제출</li> <li>○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 이상(유효기간은 사업공고일 기준)</li> <li>* 신용평가기관 : 나이스디앤비, 나이스신용평가정보, 서울신용평가정보, 한국기업데이터, 한국기업평가</li> <li>○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하는 기업</li> <li>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</li> <li>* 지원기관(IT기업)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</li> </ul>

## 2. 지원기관 풀(Pool) 신청

- 해당사업 :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,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
  - 접수기간 : 2013. 7. 1(월) 09:00 ~ 7. 19(금) 18:00
  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구비서류
    - \* 관련양식은 <http://it.smba.go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  -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
  - 접수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
- ※ '13년도에 이미 등록된 지원기관(IT기업)은 신청 불필요

## 3. 지원기관 관리

- 서류 검토를 통과한 지원기관 중 2013년 정보화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'2013년 정보화사업 지원기관 풀'에 등록
  - 서류 검토를 통과한 지원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격을 얻고, 심사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만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관 풀로 인정
- 전담기관은 서류 검토를 통과한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, 사업 수혜실적,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일정 점수 미만의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

## V. 문의 및 연락처

기관명	연락처 (홈페이지)
중소기업청	기술협력보호과, 042-481-4400 (www.smba.go.kr)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경영정보화부, 042-388-0312, 0318 (www.tipa.or.kr)

\* 기술유출방지사업과 관련하여서는 '중소기업 기술보호 포털'([www.ultari.go.kr](http://www.ultari.go.kr)) 참조

# 중 소 기 업 청

##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